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9. 12. 24(목)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송은섭 의원 외 21인

나.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09년 9월 21일
- 회부일자 : 2009년 10월 5일

다. 상정일자 :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09.10.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보류
-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09.12.16) 재상정, 심사의결(수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산업경제위원회 송은섭 의원)

가. 제안이유

-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는 미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귀농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귀농대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농업·농촌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귀농인의 책무 규정(안 제4조)
- 귀농인의 육성·지원을 위한 주요 사항(안 제5조)
- 귀농 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안 제8조)
- 귀농인의 정착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과 시설보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안 제10조)
- 귀농인 지원 자금의 관리·정산·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귀농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관한 지원취소와 회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민병완)

-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로서 충청북도의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함.
- 다만, 귀농인 지원을 위한 향후 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수정안 요지

□ 수정 이유

- 제정되는 조례안 중 조문 명확성과 원활한 시행을 하기 위함.

□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조 중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으로 함.
- 안 제2조제1호 중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으로 함.
- 안 제2조제2호 중 “60세”를 “55세”로 함.
- 안 제2조제4호 중 “제3조제5호나목”을 “제3조제5호”로 함.
- 안 제8조제2항 중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를
“귀농인의 농업인턴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의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대한 수정안
-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9. 12. 16

제안자 : 송은섭 의원의

□ 수정 이유

- 개정되는 조례안 중 조문 명확성과 원활한 시행을 하기 위함.

□ 수정 주요내용

- 안 제1조 중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으로 한다.
- 안 제2조제1호 중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으로 한다.
- 안 제2조제2호 중 “60세”를 “55세”로 한다.
- 안 제2조제4호 중 “제3조제5호나목”을 “제3조제5호”로 한다.
- 안 제8조제2항 중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를
“귀농인의 농업인턴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한다.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 중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으로 한다.
- 안 제2조제1호 중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으로 한다.
- 안 제2조제2호 중 “60세”를 “55세”로 한다.
- 안 제2조제4호 중 “제3조제5호나목”을 “제3조제5호”로 한다.
- 안 제8조제2항 중 “귀농인 농업인턴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를
“귀농인의 농업인턴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p>4. “농촌지역”이란 법 제3조제 5호 나목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단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제외)</p> <p>제8조(교육훈련 지원) ① (생 략)</p> <p>② 도지사는 귀농인이 영농을 체험하기 위한 귀농인 농업인턴 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4. ----- 제3조제5호-----</p> <p>-----</p> <p>-----</p> <p>-----</p> <p>제8조(교육훈련 지원) ①(제정안과 같음)</p> <p>② -----</p> <p>-----</p> <p>-----귀농인의 농업인턴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와 제25조에 따라 충청북도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만 55세 이하의 자가 다른 시·도(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농업이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귀농인의 집”이란 농촌지역으로 귀농하거나 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집을 말한다.
4. “농촌지역”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단, 특별시·광역시 지역은 제외)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와 제9조에 따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귀농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귀농인 지원 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인의 책무) 귀농인은 교육, 주택, 창업자금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조속히 정착하여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귀농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귀농인 유치·홍보·교육, 재정보호 등에 관한 사항
2. 귀농인의 자격과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도와 시·군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육성·지원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육성·지원계획의 심의) 도지사는 충청북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하여금 귀농인의 육성·지원계획을 심의하도록 한다.

제7조(귀농 정보제공)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효율적 귀농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의 제공
2. 귀농정책을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상담요원과 귀농상담전용 전화의 설치·운영

제8조(교육훈련 지원) ① 도지사는 귀농인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인이 영농을 체험하기 위한 귀농인의 농업인턴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귀농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착자금 지원) 도지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농업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융자
2.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융자

제10조(시설보조) ① 도지사는 귀농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포함한다)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귀농희망자가 영농기술 습득, 주택·농지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도지사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관리·정산·지도·감독 등을 해야 한다.

제12조(지원의 취소와 지원금의 회수 등) ① 도지사는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귀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였을 경우

4.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 2009.11.28]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 가. 농업: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

2.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농업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나. 어업인: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수산물: 어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수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어업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단체는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유통 개선, 농어업경영의 효율화,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기능 제고 등을 통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소비자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수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미래의 농어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後繼農漁業經營人)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